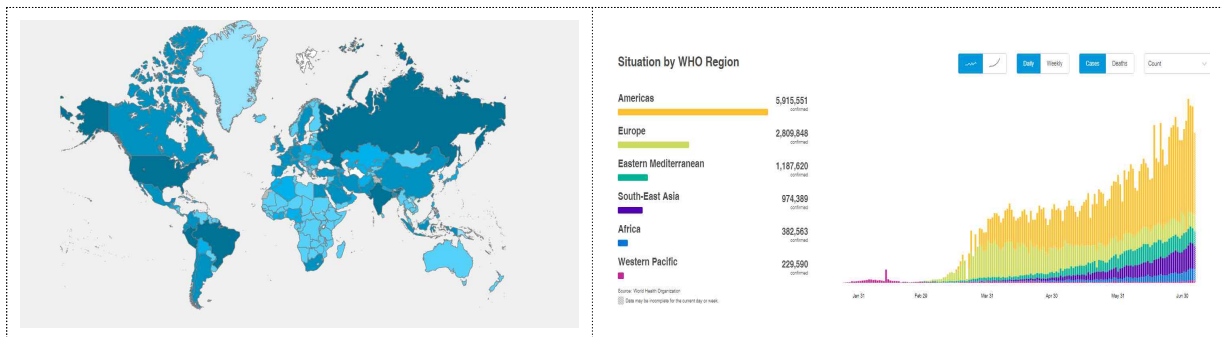


# 코로나-19 관련 국제교류부 지원사업 운영 방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 □ 추진경과

- “코로나19 심각단계 대응 관련 공연예술본부 지원사업 운영 방침 수립”(20. 3. 6)
  - 코로나-19 관련으로 사업이 취소·축소 될 경우 본부 방침을 준용하여 사업 및 보조금 운영 실시(20. 3월 초)
-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이동제한, 휴교령, 직장 폐쇄령, 단체행사 금지령 조치 확대(확진자 11,500,302명 / 사망 535,759명)
  - \* WHO공식사이트 대시보드 covid19.who.int (20. 7. 8.업데이트 기준)



- 기관협력형 사업(지정형 국제예술교류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취소통보 및 사업변경 사유 발생(20. 4월 ~ 현재)
  - 당해연도 사업취소 : 12건, 사업변경 : 7건
- 국제교류부 소관 공모사업(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비지정형 예술가 해외레지던스지원, 아르코국제예술확산지원(일반, 프로모션 키트), 청년 예술가해외진출지원,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 기간 조정, 사업내용 변경 협의건 발생(20. 4월 ~ 현재)
  - 사업포기 : 5건, 사업변경 : 52건(사업기간 조정 : 28건, 사업내용 변경 : 24건)
  - \* 세부내역은 붙임 2. 국제교류부 소관 지원사업 코로나-19 관련 사업변경 현황 참조

## □ 목적 및 필요성

- (공연예술본부 방침 보완) 국내 지원사업과 달리 국제 지원사업은 국외 이동에 따른 경비소요(항공·숙박·현지교통비)가 예산 필수

요소임. 코로나-19로 이동제한 등 현지 국가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예산변경 또는 사업 주요 변경 사항이 필요한 바, 이에 따른 사업 및 보조금 운영 방침 마련 필요

- (기관협력형 사업 방침 마련) 일반수용비(현지 주관처 지급), 민간경상보조금(공모를 통해 선정한 사업 참가 예술단체(개인) 지급)을 활용해 예술위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대응 방침 마련
- (혁신적 대안 견인) 문화예술 분야의 '뉴 노멀' 적응을 위한 국제사업 참가 단체 및 개인의 혁신적 사업개선 동기부여 및 이에 따른 변경 사항에 대한 적극적 수용으로 예술위의 현장 견인 필요성 대두

#### □ 국제교류부 소관 지원사업 운영 방침 개요

- (기본 방침) 코로나-19 관련 사업 및 보조금 운영(보조금집행 인정/불인정 방침)은 공연예술본부 방침을 준용함. 단, 국제교류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술단체(개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국제예술교류진흥을 위해 혁신적 대안 모색을 장려함
- (대상) 국제교류부 소관 지원사업 중 코로나-19 관련 사업 취소·기간 조정·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모든 사업의 단체(개인)
- (기간) 사유 발생시점 ~ 성과보고서 확정시까지
  - \* 사유 발생시점 전 기집행분에 대한 보조금 인정범위는 공연예술본부 방침 준용
- (전제조건) 코로나-19 관련 예산 변경 또는 사업 변경사항이 발생한 사업이라는 증빙서류(주관처 이메일, 취소통보 확정서류 등) 제출한 사업에 한함
  - \* 공연예술본부 방침을 준용한 기처리사업의 경우, 증빙서류 보완 예정
- (코로나-19 관련 사업변경신청서 접수 및 검토) 비목 전용 등 예산 변경 또는 사업 변경 사항이 발생한 사업의 경우, 변경 범위와 상관 없이 사업변경신청서 접수 후 사업담당자 행정검토 추진
  - 변경 범위에 따라 △공연예술본부 지침 준용, △사업담당자 협의

**및 승인\*, △국제사업 심의위원회 검토 위임 및 승인건으로 구분**

\* 사업담당자 승인시,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본부장 전결 처리함

\*\* 붙임 1. (양식)코로나-19 관련 사업변경신청서, 붙임 4. 캐나다예술위원회 코로나-19 관련 사업 운영 현황 참고

○ (국제사업 심의위원회 위임 운영) 사업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승인 여부 및 변경계획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존 심의위원회에 위임하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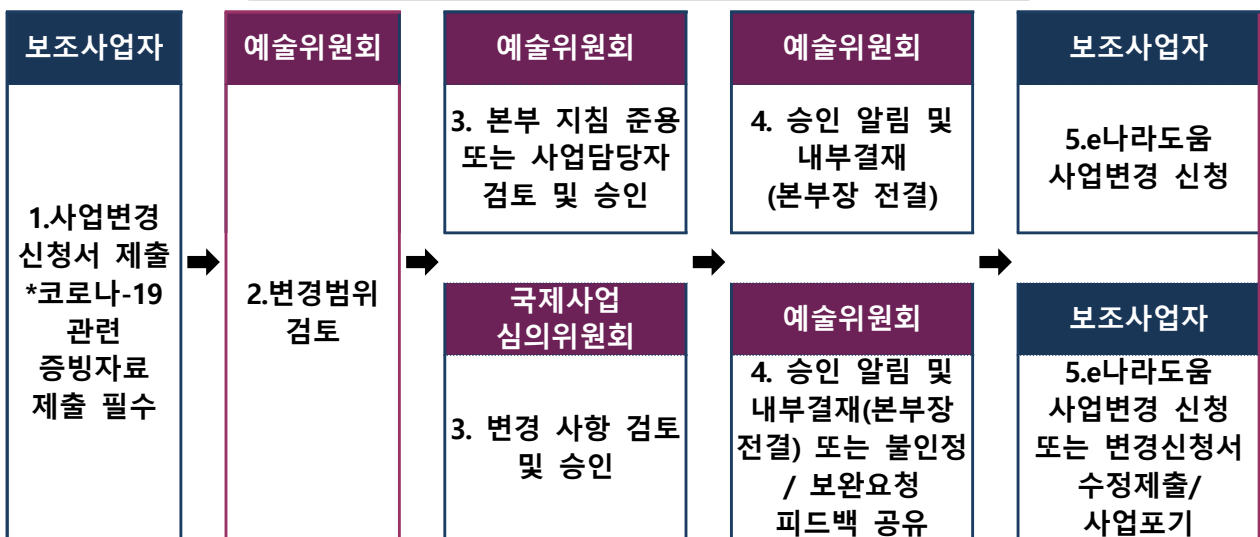
- 2020년 문예진흥기금 1·2차 국제사업 장르별/사업별 심의위원
- 운영방식 : 비대면(화상회의, 서면평가) 회의 및 의결
- 운영기간 : '20. 8월 말 ~ 11월/ 격주 진행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10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7.8.>

1. 분야별 및 사업별 지원심의 세부 방침 및 세부 심의기준
2. 지원신청사업의 적격성
3. 지원대상사업 우선순위 및 지원액 배정안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제교류부 코로나-19 관련 변경사업 처리절차>**



**<보조금 운영관리 규정>**

제16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위원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보조금 운영관리 규정>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28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이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그 내역과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일 보조비목 내에서의 보조세목 간의 전용은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보조사업의 변경 계획이 지원 신청 및 심의 당시의 지원목적과 현저히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승인할 수 없으며,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그 내역이나 사유에 따라 사업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변경으로 사업의 규모가 지원 신청 및 심의 당시의 규모에 비해 현저히 축소될 경우 지원심의에서 적용한 보조금 배정기준에 따라 당초 결정하였던 지원금액을 축소·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변경된 금액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33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코로나-19 관련 기관협력형 사업 운영 방침**

- (대상) 지정형 국제예술교류지원, 지정형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 (기존 사업운영 개요) 2개 전통예술분야 축제 플랫폼(EBU 민속축제, 프랑스 파리 세계문화의집 상상축제), 26개소, 7개 분야 창작거점 참가 예술단체(개인) 공모 추진 → 참가자(또는 참가후보군) 선정 → 주관처 심의 → 최종 참가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 참가자 보조금은 국외이동에 필요한 경비(항공료, 현지교통비) 지급으로 최소화

하고, 기타 제반경비(프로그램 참가비 등)는 예술위가 주관처에 직접 지급

- (코로나-19 관련 운영 방침\_①주관처 연기결정 통보) 기관 간 당해 연도 사업취소 및 차년도 사업기간 조정 협의 → 사업담당자 해당 사업 연기계획 수립 → '20년 사업포기신청서 접수 및 확정 → '21년 연계지원(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 (코로나-19 관련 운영 방침\_②현지 이동제한 조치에 따른 사업기간 조정) 체류기간의 변동이 없는 경우, '21. 2.28까지 사업기간 종료 가능 (정산기한 :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 체류기간의 현저한 축소 또는 기간 조정에 따른 현저한 사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검토 및 승인 필요

## □ 코로나-19 관련 국제교류부 소관 공모사업 운영 방침

- (대상)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비지정형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아르코국제예술확산지원(일반형, 프로모션키트), 청년예술가해외 진출지원,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 (기존 사업운영 개요) 5개 사업, 7개 분야 공모 추진 → 지원대상 선정 및 발표 → 보조금 지급
- (코로나-19 관련 운영 방침\_①비목 전용) 지원신청서 상 예산편성시 국외여비 또는 상당히 높은 비율의 국외여비 책정이 된 사업의 경우,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사업 내용 변경과 이에 따른 예산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타 비목 전용을 인정함. 단, 사업 내용 변경이 기존 사업의 목적과 현저히 위반되는 경우 예외로 하고 그 여부는 심의위원회가 의결함
- (코로나-19 관련 운영 방침\_②주최측 취소 통보) 코로나-19로 인한 일방적인 주최측 취소 통보는 예술단체(개인)에 대한 피해상황으로 간주하여 기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 변경 기회를 제공하고, 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 필요. 단, 예술단체(개인)이 포기 의사가 있는 경우, 사업포기신청서 접수 및 확정함
- (코로나-19 관련 운영 방침\_③주관처 연기결정 통보) 코로나-19로 인해 차년도로 사업을 연기하고, 예술단체(개인)의 동일한 사업을 초청

또는 공동협업 추진을 제안한 경우 사업 내용 변경(차년도 사업 추진에 대한 준비에 한함) 기회를 제공하고, 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 필요

- (코로나-19 관련 운영 방침\_④사업기간 조정) 위 기관협력형 사업 운영 방침 준용
- (코로나-19 관련 운영 방침\_⑤혁신적 사업계획 수립) 주최측 또는 예술단체(개인)과 주최측의 합의로 기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업 추진의사가 있는 경우, 사업 내용 변경 기회를 제공함. 단, 사업 내용 변경이 기존 사업의 목적과 현저히 위반되는 경우 예외로 하고 그 여부는 심의위원회가 의결함

\* 예시. 비대면교류방식(온라인 전시·포럼, 라이브스트리밍, 버추얼 레지던시 참가 등)

## □ 향후계획

- (8월 초) 2020년 1·2차 보조사업자 안내 및 가이드라인 배포
- (8월 중) 사업변경신청서 취합 및 주요 변경 사업 검토회의 준비
- (8월 말~계속/격주) 국제사업 심의위원회 비대면 검토회의 추진

**【붙임1】**

**(양식)코로나-19 관련 사업변경신청서**

☞ 빨간색과 파란글씨는 예시이므로, 삭제 및 정정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최종 확정시 검정색으로 변경하십시오.

[서식] 2020년 ○○○○○○○○사업  
사업변경신청서 - ○차

작성일 : 2020년 ○월 ○일

단체명	○○○○○○○○○		
사업명	○○○○○○○○○		
사업비	총 사업비	국고보조금 (문예진흥기금)	자부담금
	000,000,000원	000,000,000원	000,000,000원

**□ 주요 변경 사항**

※ 프로그램 내용(기간, 장소, 주요 참여자) 및 예산 관련 변경 발생시 내용과 사유를 작성해주세요.

예) 코로나19로 인한 대관 일정 변경

예)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의 공연 추진을 위한 온라인 스트리밍 제작

변경 전	변경 후

**□ 관련 증빙**

※ 사업변경의 불가피성을 설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명칭을 기입해주시고, 증빙자료는 사진파일로 첨부 해주시거나 별도로 제출해주세요.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발생한 변경사항인 경우에도, 코로나19가 사업변경의 주요 사유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예) 초청 페스티벌 측에서 발행한 2020년 페스티벌 취소 공문

--

□ **최초 예산표 (2020년 0월 0일 기준)**

※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제출했던 기준으로 예산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교부신청 이전인 경우 공모에 제출했던 사업 신청서 작성)

※ 사업신청서 또는 교부신청서에 기재된 자체부담액(자부담) 비율은 조정가능하나, 최소 10% 이상(총소요액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단위 : 원)

목	세목	항목	산출근거	지출 총금액	보조금결정액	자체부담액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례비	○ 출연진 0명 000,000원 0,000,000원*0명*00회 (원천세 포함)			
		홍보비	○ 현수막/배너 0,000,000원*0식			
		회계검사수수료	○ 회계검사 수수료 000,000원*1식			
	임차료	장비대여비	○ 음향(스피커) 000,000원*000회			
여비	국내여비	교통비	○ 철도교통비 00,000 * 0회 = 000,000			
	...	...				
<b>총 합계</b>				<b>000,000,000</b>	<b>000,000,000</b>	<b>000,000,000</b>

□ **변경 예산표 (2020년 0월 0일 기준)**

(단위 : 원)

목	세목	항목	산출근거	지출 총금액	보조금결정액	자체부담액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례비	○ 출연진 0명 000,000원 0,000,000원*0명*00회 (원천세 포함)			
		홍보비	○ 현수막/배너 0,000,000원*0식			
		회계검사수수료	○ 회계검사 수수료 000,000원*1식			
	임차료	장비대여비	○ 음향(스피커) 000,000원*000회			
여비	국내여비	교통비	○ 철도교통비 00,000 * 0회 = 000,000			
	...	...				
<b>총 합계</b>				<b>000,000,000</b>	<b>000,000,000</b>	<b>000,000,000</b>

※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제출했던 기준으로 예산표를 정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붙임3】**

# **영국예술위원회 코로나-19 관련 사업 운영 현황**

## **□ 영국 정부 재개 지침(Covid-19: Government reopening guidance)**

- (‘20. 6.23 영국 총리 발표) 7월 4일부터 미술관과 박물관의 재개관을 확정. 금번 완화 조치에 극장이나 공연장에서의 라이브 공연은 포함되지 않으나 상영은 가능함
- 정부는 지침 마련을 위한 문화 쇄신 TF 및 실무그룹(Cultural Renewal Taskforce and Sector Working Groups)을 조직, 운영함

## **□ 대응에서 적응까지 : 3단계 지원방안 (Th ree Phases)**

- 영국예술위원회는 정부 및 문화예술 분야와 함께 대응, 안정화, 적응으로 구성되는 3단계 지원 방안을 수립
- 1단계 : 대응
  - 단기적으로 최대한의 보호 조치
  - 기금 지원 목적 변경: 1억 6천만 파운드 (한화 약 2,400억 원)의 긴급 대응 기금을 지급했으며 재원은 대부분 복권 기금을 통해 조달
  - 기금 지원 조건 완화: 현금 압박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 일자를 앞당겼으며 현(現) 국립 포트폴리오 기관 지정을 1년 연장
  - 타 지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 및 기타 기금 지원 기관의 지원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지
  - 증거 취합: 코로나 19 영향 조사를 통해 최선의 코로나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증거 취합을 지원
- 2단계 : 안정화
  - 재개에 따른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때 재개를 지원하고 비즈니스 모델 조정과 변화된 환경에서의 운영을 지원
  - 코로나 19 영향 조사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에서 증거와 데이터, 인사이트를 취합
  - 1단계에서 취합한 증거와 관객 태도 조사, 국제 사례 연구 등의 자료를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와의 논의에 활용하고 문화

예술 분야의 효과적인 재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것

○ 3단계 : 적응

- 내년 초부터 문화예술 분야의 '뉴 노멀' 적응 지원을 목표로 삼을 것
- 신규 10개년 전략이자 향후 위원회의 기본 투자 원칙이 될 Let's Create에 대한 3개년 이행 계획을 시행 예정
- Let's Create에 명시된 목표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게 됨.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와 납세자, 복권 기금에 경제·사회적 편익을 실현하는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예술가 및 문화예술 기관에 투자할 예정임. 이는 영국의 쇄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긴급 대응 기금(Emergency Response Funds, ERF)

- 코로나-19 관련 기관 및 개인을 위한 긴급 대응 기금 마련 : 2,400억원(1억 6천만 파운드)
- 개인 긴급 대응 기금
  - 예술가, 창작자, 프리랜서들을 위해 300억 원(2천만 파운드)을 조성했으며 약 375만원(2,500 파운드)까지 지원 신청이 가능
  - 분야 : 전장르, 복합예술, 박물관 실무, 도서관 활동 등
  - 추진현황 : 1·2차 동일 예산 배정

회차	접수 개시	마감
1회	2020년 4월 9일	2020년 4월 16일
2회	2020년 4월 16일	2020년 4월 30일

○ 비(非)NPO 긴급 대응 기금

- 약 750억 원(5천만 파운드)을 조성했으며 약 53백만원(3만 5천 파운드)까지 지원 신청이 가능
- 본 기금은 기관들이 위원회의 신전략 Let's Create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 자립 또는 향후 작품을 지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
- 자격요건 : 공공 기금 지원 문화 활동 이력이 있는 기관. 국립 포트폴리오 기관, Music Education Hubs, Creative People and

Places 주도 기관들은 본 기금 신청 자격이 없음

- 추진현황 : 개인 사업과 동일
- NPO 긴급 대응 기금
  - 약 1,345억 원(9천만 파운드)을 조성했으며 최대 9천만 파운드 지원
  - 본 기금은 긴급 지원금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NPO 및 CPP 기관들이 2020년 9월말까지 생존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관들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
  - 지원금 상한: 신청 지원금에 상한은 없으나 기관들은 2020년 9월 30일까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금액만을 신청해야 함
  - 자격 요건: 국립 포트폴리오 기관 (섹터 지원 기관 및 현재 국립 포트폴리오 자격이 철회되어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기금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포함), CPP 컨소시엄을 대표해 Creative People and Places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기관들.

접수 개시	마감일	결정
2020년 5월 12일	2020년 5월 19일	2020년 6월 30일

## □ 코로나-19 관련 개인지원(Support for Individuals)

- 자영업자/프리랜서: 고용 지원 및 세액 감면 고용 지원
  - 자영업 소득 지원 제도 (SEISS) : 월 평균 수입의 80%에 해당되는 과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약 11백만원(7,500 파운드) 한도 내에서 일시 수령. 청자는 코로나로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음을 확인해야 함
- 개인 및 피고용인에 대한 정부 지원
  - 코로나 일자리 유지 제도 : 법정 병가 수당(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아픈 경우에는 주당 94.25 파운드 (한화 약 14만원)의 법정 병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음), 국민수당(병가 수당 자격이 없는 경우), 근로 불가한 개인 혜택(고용 및 지원 수당 (ESA))
- 예술 실무가들을 위한 지원
  - 코로나 19 영화 TV 긴급 구제 기금
  - Freelands Foundation 긴급 기금 : 예술가 및 프리랜서 창작가들을 대상. 1,500파운드-2,500파운드, 총 1백만 파운드 지원
  - 음악인 노조 긴급 지원 : 음악인 노조원들을 위한 기금으로 음악인

- 노조 웹사이트에서 신청
- 배우 구제 기금
  - 왕립 극단 기금 : 연령에 관계없이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제공
  - The Royal Variety Charity : 연령 제한 없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해온 근로자들을 지원
  - PRS Emergency Relief Fund 긴급 구제 기금 : PRS 작가 회원으로 등록된 지 2년이 경과한 자로 지난 2년 간 PRS 로열티 수입 500 파운드 (한화 약 75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

## □ 코로나-19 관련 기관지원(Support for Organizations)

- 고용주 지원
  - 코로나 일자리 유지 제도(CJRS) : 코로나 위기 기간 중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직원 급여를 지원
  - 유연 무급 휴직제도, 육아 휴직자 면제, 병가수당
- 코로나 일자리 유지 제도 및 영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 포트폴리오 기관
  - 정부에서는 문화예술위원회 국립 포트폴리오 기관들의 코로나 일자리 유지 제도 신청 자격을 확정(자격 충족의 경우)

## 【붙임4】

# 캐나다예술위원회 코로나-19 관련 사업 운영 현황

### □ 지원사업 관련 일반 변경사항

#### ○ 일반 운영 현황

- 일부 사업 지원신청 기간·마감일, 지원금 교부 일시 보류
- 비대면 평가위원회 개최 추진
- (지원결정 후, 연기사업) 사업확정 전, 지원금 수령 불가. 변동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후 담당자에게 개별 연락 및 협의
- (지원금 집행 변경사항\_①여비발생 사업) '20. 9. 1 한 국내·외 출장(여비) 발생 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 중단(사업계획 변경 가능)
- (지원금 집행 변경사항\_②보류대상 사업) 모든 출장(여행) 관련 활동 및 모임, 출장이 필수 요소인 모든 지원 신청, 출장을 요하는 지원 신청
  - 중단기간( '20. 9. 1 한) 동안 출장을 요하는 기접수된 사업의 지원 신청은 지원 신청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함
    - 출장 없이 사업 수행 : 여비만 예산항목에서 제외, 사업담당자에게 변경사항 공유 및 협의
    - 중단기간 중 여비에 대한 지원금 기교부 사업 : 사업 관련 기타 경비에 대한 지원금 유지. 사업 변경, 연기 또는 취소 관련 비용 집행 가능.
      - ⇒ (중단기간 이후 출장 연기) 사업 주요 변경사항은 변경신청서 작성 후, 검토 및 승인 필요
      - ⇒ (사업 취소) 사업 철회 또는 포기 필요
      - ⇒ (중단기간 후, 출장 발생 사업) 위원회의 중단 기간 주기적 확인 필요. 교통·항공편 예약시 변경 또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교통편 예약 고려
- (사업 취소 및 연기) 캐나다문화예술위원회는 캐나다 보건당국 및 지방 보건당국을 비롯해 공공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지원금 수혜자들에게 모든 공개 행사의 취소 또는 연기를 권장함

- (사업 취소 및 연기의 조건부 지원\_①기타 경비(여비제외) 지원금 집행인정) 행사가 취소된 경우, 여타 지원 대상 경비에 대한 지원금 유지
- (사업 취소 및 연기의 조건부 지원\_②혁신적 사업계획 수립) 작품을 대중과 공유할 수 있는 혁신적 방법을 도출할 경우, 사업변경신청서 제출 및 승인 필요 (예. 라이브스트리밍, 팟캐스트, 영상 등) 성과보고서에 코로나 19의 영향과 지원금 변경 사용처 명시 필요
- (사업 취소 및 연기의 조건부 지원\_③취소 관련 경비 지원금 집행인정) 사업 수정, 연기 또는 취소 관련 비용 인정. 사업변경신청서 제출 및 승인 필요
- (미사용 지원금 반환) 미사용 지원금은 집행 불가.